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김 현 숙(경북대학교 박사수료)\*

### 요 약

본 연구는 2020. 3. 1. 개정·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처분기관으로서 학교에서 구성·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처분에 대한 불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제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폭력의 유사 사안에 대해 학교별 처분양형에 차이가 있어 자치위원회의 신뢰도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법개정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운영하게 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법 개정 이후 각 지역의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의 증원 및 배치가 필요하며, 셋째, 행정심판의 청구나 취소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 등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집행정지 청구에 대하여 실제적인 인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섯째 행정심판 재결 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통합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신고의 기한 및 규정 설정, 행정심판청구 및 취소의 기준 적용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 I. 서 론

최근 학교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 교신저자(hwaninn@gyo6.net)

■ 접수일(2020.08.30), 심사일(2020.09.14), 게재확정일(2020.10.07)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2019.4.11.자 2017헌바140결정)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유형적 폭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태양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고, ‘등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열거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개인과 가족,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청소년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가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이들이 성장하면서 상습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해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송열매, 2018).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현장은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지도보다는 신고, 조사, 처벌, 법적인 규정과 절차 등이 우선되어 교육적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박정욱, 2019).

2019 8. 20.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된 의무기관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일부는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의 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학교를 상대로 하여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조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해학생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또, 이에 대해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의 법정 다툼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치위원회의 처분결정이 법률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교사출신 변호사’, ‘학폭위 위원출신 변호사’ 등 새로운 법률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일부 교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것에 대비해 학교폭력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약 4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판결 열람 시스템에 의하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

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무효나 취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공개된 것만 해도 150건이 넘으며 대부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치위원회 처분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kbs 뉴스, 2019. 12. 17).

재심건수와 행정심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규제가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김정연, 2017).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sup>1)</sup>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행정심판 청구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일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조치만 받아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급학교 진학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도 학부모의 자존심이나 감정 등의 개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주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학 중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를 쓸 때는 생활기록부의 기재 삭제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김갑석, 2015).

그리고, 2019. 8. 20. 일부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정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경미한 사건 제외)에 대하여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심의·처분하게 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로 단일화됨으로써 향후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의 추이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법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행정심판 업무담당자를 증원하였고,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학기는 거의 모든 교육현장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그간의 행정심판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상의 하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외면적·내면적 운영,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그 이후의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당사자들간의 갈등, 학교환경요인, 가정환경 등이 학교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

1) 교육부(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향과 원인 관련(도기봉, 2007; 이상도, 2016; 정지원, 2014; 김원영, 2018),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관련(김진훈, 2006; 오민영, 2013; 조은겸, 2016; 양정숙, 2013),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윤태현, 2017; 박영욱, 2014; 임재연, 2015; 김갑석, 2015; 김이진, 2017),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관련(오연, 2013; 이정도, 2014; 박신영, 2012; 서윤하, 2018; 김동은, 2014),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관련(박정욱, 2019; 윤주연, 2019; 진주현, 2020; 서윤호, 2013; 조성규, 2019)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학교폭력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정관희(2018)는 “행정심판 판례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갈등분석과 개선방안”에서 재결문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초등학교(학부모)인 경우 15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열람 가능한 재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가·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그간의 법체제 하에서 운영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 둘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외면적 운영에 관한 문제점
- 셋째,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면적 운영에 관한 문제점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과 주요내용 변화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들 수 있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2003년 현승일 의원에 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2004년 1월 29일 제

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시 주요내용(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6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법 제9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법 제10조), 학교에 상담실 설치 및 전문 상담교사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법 제12조). 또,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법 제13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권고 또는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4조 및 제15조).

2012. 1. 26. 일부 개정을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 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7조),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조의 2 신설).

2012. 3. 21.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으며(법 제2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을 포함시켰다(법 제1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학부모를 추가시키면서(법 제15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였고(법 제16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였다(법 제17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의 동참을 의무화하였고(법 제17조),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였다(법 제17조의 2).

이후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하여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인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자치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9. 8. 20.(시행 2020. 3. 1.) 일부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두고 있는 자치위원회를 폐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징계위원회와 지역위원

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 2. 학교폭력 사안의 처분기관과 불복과정의 변화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기관과 불복과정은 2019. 8. 20.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시행 2020. 3. 1.)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처분기관으로 법 개정 이전에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한 자치위원회와 법 개정 이후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비교할 수 있다.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였으나, 담당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기피,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결정의 전문성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관으로는 지역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2004. 1. 29. 「학교폭력예방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와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나 징계조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재심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2008. 3. 14.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 설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위원회의 기능에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2. 3. 21. 일부 개정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학”과 “퇴학처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sup>2)</sup>하거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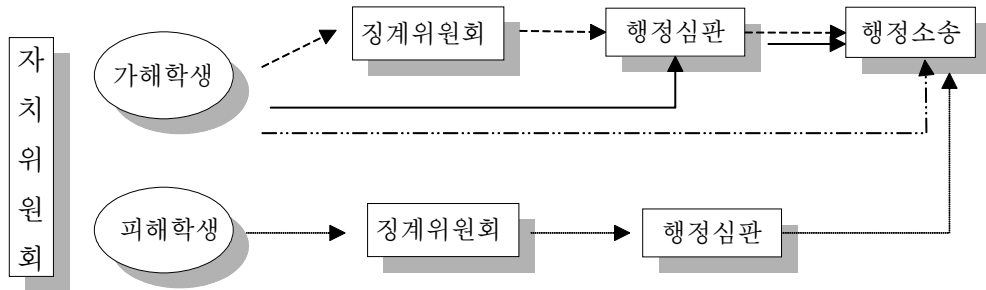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소송을 제기<sup>3)</sup>할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피해학생은 공립학교와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직접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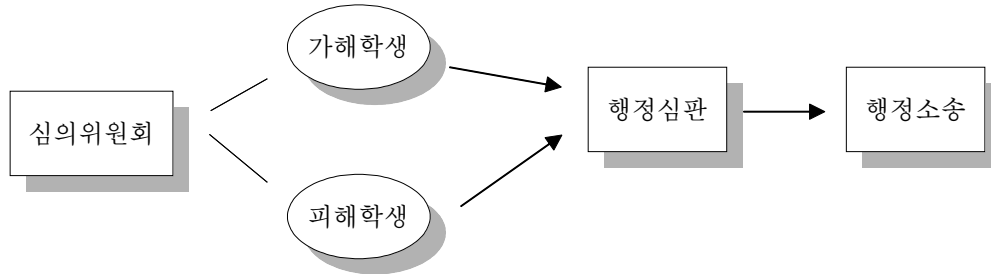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법 개정 이전)

이렇게 다소 복잡한 학교폭력 처분과 불복절차는 2020. 3. 1.부터 한가지 경로로 일원화되었다. 학교마다 설치·운영되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분을 하며, 기존의 징계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시킨 것이다[그림 2].

개정 전 법에서 “전학”이나 “퇴학처분”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나머지 1호 ~ 7호 조치에 대한 재심은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로 인해서 “전학”,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처음부터 바로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였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2]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법 개정 이후)

### 3.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4) 및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5)에 근거하여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장이 처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즉,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교육장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나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행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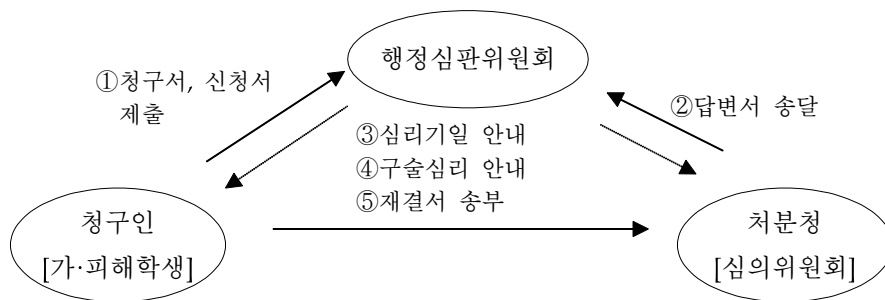
4)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위원회와 처분청에 제출하게 되며(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할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 구술심리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 후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다.([그림 3])



[그림 3] 행정심판 절차(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수정·보완)

행정심판의 진행과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은 “전학”, “퇴학조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신청을 할 경우 징계집행이 정지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 서면사과 ~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취지와 이유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명 이유나 근거없이 단순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경우, 인용 결정을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까지 이루어지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신청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행정심판의 활용은 소송제기의 완화를 가져와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소송경제적 기능까지 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어느 누구도 자기행위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볼 수도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

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행정심판의 근거를 합법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질적연구에서는 각종 기록물, 문서정보, 참여관찰, 인터뷰, 직접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을 통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록정보의 장점은 안정성, 중립성, 정확성, 포괄성을 지니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자료를 정확히 검색하기 어려운 점과 자료수집이 불완전한 경우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Yin, 2016).

당초 연구자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최근 10년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료의 과다 및 정리·수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개자료의 범위 축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최근 2년간의 자료로 범위를 한정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일부공개, 비공개 등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교·분석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부득이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대신 사례분석으로 연구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후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에도, 매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실시되었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2학기에 한 번만 실시된 상태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나 통계 등에 대한 자료집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를 시작할 때까지도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법에 따라, 학교장 처분에 대한 가해학생의 처분취소 청구 건이 대부분이었고, 7월이 되어야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분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12년 ~ 2019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 청구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77건을 분석함으로써 자료 수집과 분석에 정확성을 기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약 3년을 근무하면서 수 차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신뢰도와 접근성의 어려움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생기부, 학생부)에 기재해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규정된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자치 위원회가 없어지고 모든 재심 경로가 일원화되어 시행되는 2020년 이전까지의 행정심판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심판의 기술적 통계현황, 재결 유형과 이유, 행정심판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찾아봄으로써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행정심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존의 행정심판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는 대부분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개적 재결문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사건 케이스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회의자료부터 처분, 행정심판 재결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깊이있는 내용 분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연구 결과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자료는 2004년부터 파일이 존재하여 검색이 가능하였는데, 이때부터 2011년까지는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금지처분 취소청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이 추가되기로 결정된 2012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청구되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77건의 사례를 학교급별, 처분종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현황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자치위원회의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현황

(단위:건)

연도	학교급별				처분종류 <sup>6),7),8)</sup>									소 취 하	재결현황			
	초	중	고	소계	1	2	3	4	5	6	7	8	9		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
2012			3	3												3		
2013		2		2	1	1			3	1						1	1	
2014		1	1	2	1	1	1		1	1						1	1	
2015	1	1		2	1	1			1		1	1		1		1		
2016		2	5	7	3	3	2		5	3	1	1		2		4		1
2017	4	4	2	10	4	5		1	6	4	1	2				7	2	1
2018	4	6	11	21	8	5	4	1	17	4	4	3	1	3		12	4	2
2019	9	16	5	30	17	14	9	2	28	9	3	2		5	2	16	4	3
계	18	32	27	77	35	30	16	4	61	22	10	9	4	11	2	45	12	7

학교급별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초 18건, 중 32건, 고 27건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초 73.2%, 중 41.4%, 고 7.5%로 나타나고 있어 건수 자체는 중학교가 가장 많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변화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단위: 건)

학년 급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연평균 증가율
초	2,792	3,239	4,092	6,159	6,327	22,609	22.69%
중	11,322	10,585	11,775	15,576	16,736	65,994	10.26%
고	5,266	6,006	7,599	9,258	9,252	37,381	15.13%
계	19,380	19,830	23,466	30,993	32,315	125,984	13.64%

※ 자료: 신경민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요구자료, 교육부 제출. 재구성.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시작한 첫 해인 2012년에는 퇴학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낮은 수준의 처분에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처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서면사과 1건이라는 단일 처분을 받고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처분의 양태를 살펴보면 전체 77건 중 출석정지가 17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내봉사 15건(19%), 서면사과 12건(16%)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서면사과 12건을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중 초 5건, 중 2건, 고 5건인데 초등학교 5건 중 3건은 청구인·피청구인 모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쌍방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의 경우, 사건 경위, 진행경과, 당사자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문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청구인인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피청구인

6)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7) 병과 처분의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 1건을 기재하였고, 2호~4호, 6호~8호 처분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호처분은 미기재(5호만 단독처분된 경우는 없음)
- 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보호시키지 않았음
- 9)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시작년도의 건수가 0이므로 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연평균증가율을 산출하였음

인 학교 간의 감정대립(상대 학부모 포함) 양상이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학교의 처분에 대한 불신과 불만 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가·피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해학생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피해학생으로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상대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부분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후 징계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10건이며, 재심청구 대상인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6건이 있었다.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관계인으로부터 조력과 상담을 받고, 어떠한 불복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재심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대상 사례의 청구인 현황은 가해학생 54건, 가·피해학생 20건이며,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청구한 건이 3건이며 이 중 1건은 신청을 취하하였고, 2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변경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음으로 판단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으로 기각재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인의 유형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학생이 청구한 3건을 제외한 74건 중 청구인이 가·피해학생인 경우가 20건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일방적이고 명백하게 가해학생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간의 성추행 관련 건에서는 서로 쌍방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고, 신체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신고되면 우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동시에 본인도 다치거나 상처를 입었다면서 상대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는 등 쌍방이 가·피해학생으로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쌍방간의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학생이 사고 당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심지어는 몇 년전의 일들을 끄집어 내어 상대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여 가해학생을 자치위원회에 신고한다거나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졸업 뒤의 신고로 자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고, 신고를 받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 전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지현, 2018). 즉, 상급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 의도적으로 이전의 사소한 사건이라도 찾아내어 상대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해서 서로가 가·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쌍방이 가·피해학생인 경우 처분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악용하는 점도 없지않아 있어 보인다.

## 1.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 가. 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상 하자

[case 1]

- 청구인(○○중 2학년)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상대학생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함
- 자치위원회 처분: 서면사과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
- 재결 사유: 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은 자녀가 졸업하였으므로 위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처분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됨

[case 2]

- 청구인(○○중 1학년)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함
- 자치위원회 처분: 출석정지(7일)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
- 재결 사유: 자치위원회 위원 9명 중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한 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판례는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하여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중략)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4구합7133판결).

또,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12.14.선고, 2017구합8085)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중략)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른 책임교사는 학교의 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 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자치위원회의 운영 절차상 하자

[case 3]

- 청구인(○○중 1학년)은 사이버 상 말다툼을 한 피해학생이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에 억울해 하며 3층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뛰어내려 죽어라'고 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함
- 자치위원회 처분: 교내봉사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
- 재결 사유: 청구인은 가·피해학생으로서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피해학생으로서의 통지는 받았으나, 가해학생으로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으로서의 처분 및 가해학생으로서의 처분을 의결하였음. 이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배제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위법한 처분임

[case 4]

- 청구인(○○중 1학년)은 반장으로서 급식 대기 중 순서를 지키지 않는 상대학생에게 질서를 요구하던 중 서로 폭력이 오고 감
- 자치위원회 처분: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보복 행위 금지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
- 재결 사유: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조치를 할 것을 미리 통지할 수는 없지만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처분하려고 원인이 되는 사실(자치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62586판결).

77건의 행정심판 중 인용된 경우는 10건(일부 인용 제외)으로 위의 사례를 포함한 7건이 학교측(자치위원회)의 위법요인으로 인해 인용되었으며, 3건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으로 인해 인용되었다. 학생 전출 등으로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위원회 참석, 자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따른 절차 고지 의무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학교측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심판의 인

용재결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상 혹은 운영상 학교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인용재결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자신감 결여 및 업무 기피 현상, 자치위원회의 재개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청구인은 학교측의 자료 조사 미비, 불공정한 판단 등 학교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자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측의 위법한 하자로 인해 청구가 인용되는 재결이 나는 경우 학생·학부모와 학교측 상호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인용재결이 난 후 학교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자치위원회를 재개최하였을 경우 동일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이 수궁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법개정 이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한계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는 학교장의 의무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는데, 제1항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장의 학교폭력 축소 또는 은폐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그동안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이의제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한철상, 2020).

#### 다. 자치위원회 처분의 양형 차이

[case 5]

- 청구인들(○○중 3학년 외 4명) 중 A는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치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피해학생의 신체 중요한 부분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음
- 자치위원회 처분: 출석정지 15일(5명), 특별교육 20시간

[case 6]

- 청구인(○○고 2학년)은 아는 후배와 친분이 있는 피해학생을 포함하여 여럿이 술을 마신 후 옆방에서 잠이 든 피해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함
- 자치위원회 처분: 퇴학

[case 7]

- 청구인(○○중 1학년)은 교실 문앞에 서있는 피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밀치고, 왜 치냐고 짜증을 내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나며 화를 낸 사실이 있음

- 자치위원회 처분: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case 8]

- 청구인(○○고 1학년)은 피해학생과 같은 기숙사방에서 장난과 다툼을 하던 중 맞짱을 하기로 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잠시 멈추었으나 다른 학생들과 다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함
- 자치위원회 처분: 서면사과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관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의결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징계의 양정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설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하여 고시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case 5]은 1명의 남학생 한명이 여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4명의 남학생들은 이를 방조·동조한 경우로 이는 일반적인 강간죄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으로 간주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강간죄를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범죄에 해당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를 처분하였다. 반면에 [case 6]는 1명의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퇴학처분을 받았다. 물론, [case 5]의 경우 가해학생들 또한 미성년자이고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재학중이라 퇴학조치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집단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가 출석정지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자치위원회의 처분 양형에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case 7]의 경우, 평소에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신체적 접촉 및 언어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당 자료에는 책임교사가 가해학생에게 고의적으로 밀친 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자, 가해학생은 본인의 고의적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가해학생이 고

의성을 시인하였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으며, 화해가 잘 이루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년말이 1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case 8]의 경우, 충분한 인지력이 형성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간의 과격한 폭행사건으로 사건자료 중 관련 학생들의 경위서나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폭행의 수준이 상식선을 뛰어넘는 정도임에도 학교측의 처분은 서면사과에 그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는 학교가 처한 여러 환경, 즉 학교 자체 분위기, 학부모의 인식 및 수준의 정도, 지역분위기, 문화 수준 등에 따라 나름의 성향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마다 처분 양형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나 처분 양형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징계양형의 차이 등은 향후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개선되고, 특히나 지역 내 징계 양형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case 5]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가해학생들이 출석정지 처분을 이행하고 모두 학교에 복귀를 하였는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지 혹은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는지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긴다.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외면적 운영에 관한 문제점

###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담당자 부족 및 업무 과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법무부서에는 보통 1명의 주무관과 1명의 사무관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무관 1명이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평균 1달에 한번 정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며, 보통 1회 개최 당 4~5건의 안건을 심의·재결한다. 실제적으로 담당공무원 1명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청구적격 검토, 답변서 송달 및 관련 서류 작성, 회의개최 계획 수립, 안건 정리 및 검토,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재결문 작성·송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절차 및 자료 작성 안내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행정심판과 관련한 민원인의 전화응대도 수십 분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자료를 파일로 처리하여 위원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안을 제안해 보았으나,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 힘들었으며, 여전히 회의 때마다 수 백장에 이르는 회의 자료를 제작하여 위원 수만큼 복사하여 편철하여 발송하고

또 위원회 종결 후 자료를 파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행정심판 담당 부서에 대하여 장기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곧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와 공정성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2020. 3. 1.자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건이 아닌 경우 공·사립학교, 가·피해학생 구분없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하고, 또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현재보다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행정심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0. 1. 1.자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자를 1명 증원하였고, 23곳의 교육지원청 중 10곳의 시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17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여 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나. 신청 취하로 인한 행정력 소모

연구대상 77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11건으로 행정심판 청구 후 학교측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였거나, 처분을 수용할 의사, 기타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심판개최일로부터 최소한 2주일 전에는 청구건, 개최일시, 장소 등이 확정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행정심판 관련 자료가 송부되어야 한다. 행정심판 업무담당자는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의 적격검토 등을 비롯하여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따른 각종 자료 송부 및 보완 요청, 답변서 작성 등을 하게 되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오전이나 오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 1회 개최 시 4 ~ 5건을 처리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재결기한인 60일이 다 되어가서야 처분이행을 사유로 행정심판을 취하한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1주일도 안되어 신청을 취하한 경우도 있다. 또, 그나마 행정심판 취소의 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이유없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심판이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소요가 없고, 신청의 간편성 등으로 단순히 서면사과 처분만 받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청 후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sup>10)</sup>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수수료(인지,

송달료 등) 부과나 행정심판 청구 후 취소기한의 설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행정심판 청구 후 신청취하 현황

연도	학년	처분 <sup>11)</sup>	행정심판			취소사유
			청구일	취소일	청구 후 취소기간	
2015	중3	전학	2015.11.25.	2015.12.01.	6일	피해자측의 압박
2016	중3	출석정지	2016.04.18.	2016.05.31.	43일	미기재
2016	고3	교내봉사	2016.08.11.	2016.09.07.	27일	미기재
2018	초5	학급교체	2018.09.27.	2018.10.23.	26일	미기재
2018	초2	학급교체	2018.11.08.	2018.11.22.	14일	처분이행
2018	중2	교내봉사	2018.11.14.	2019.01.09.	56일	처분이행
2019	중2	서면사과	2019.02.07.	2019.03.18.	39일	개인사정(건강약화)
2019	초6	교내봉사	2019.10.15.	2019.10.29.	14일	처분청의 직권취소
2019	중3	접촉,협박,보복금지	2019.10.24.	2019.11.04.	11일	처분이행
2019	고1	교내봉사	2019.12.06.	2019.12.09.	3일	당사자 결격
2019	고	출석정지	2019.12.13.	2019.12.29.	16일	처분 수용

### 3.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면적 운영에 관한 문제점

#### 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과 본안심리에 갈음한 '기각'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며<sup>12)</sup>, 만약 심판 진행 중에 처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전학처분의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집행정지 신청은 더욱 중요한 절차

10) 「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1) 병과된 처분 중 높은 단계 처분 표시, 특별교육 제외

12)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할 수 있다.

[case 9]

- 청구인(○○고 2학년)은 성추행의 가·피해학생으로 2016.12.7. [전학]처분을 받고,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2017.2.10.)
- 2017.2.23.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함

[case 10]

- 청구인(○○학교 7학년)은 상대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강요, 신체폭력 등으로 2018.7.4. [전학]처분을 받고,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2018.8.31.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2018.9.17.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함

[case 9]과 [case 10]의 경우, 처분의 원인은 상이하지만 두 건 모두 [전학]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case 9]의 경우, 피청구인측(학교)에서 상대학생도 이미 전학처분을 이행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 결과 본안 재결과 함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하였고, [case 10]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고 없으며, 처분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용하였다. 여기서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case 9]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고자 한 청구인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두 건 모두 피해학생들이 전학가고 없는 상황, 처분 또한 전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상이함도 주목할 만하다.

<표 4>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현황

연도	심판 청구 건수	집행정지 신청건수	결정					
			인용		기각		각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	3	0	·	·	·	·	·	·
2013	2	0	·	·	·	·	·	·
2014	2	1	1	100.0	·	·	·	·
2015	2	1	·	·	1	100	·	·
2016	7	1	·	·	1	100	·	·
2017	10	2	·	·	2	100	·	·
2018	21	11	2	18.1	7	63.6	2	18.1
2019	30	15	4	26.6	10	66.6	1	6.6
계	47	31	7	22.5	21	67.7	3	9.6

<표 4>에서 보듯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1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수 중 인용이 7건으로 22.5%, 기각이 21건으로 67.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결정 사항으로서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각된 21건 중 15건은 행정심판의 재결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바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안 재결에 갈음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실제적으로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 건수 31건 중 22건 즉 약 70.9%가 인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증가한 2018년과 2019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실제적 인용(즉시 인용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즉각 결정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에 갈음한 기각 포함)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8년은 72.7%, 2019년은 80%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집행정지의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의 폐단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부담한 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 후 재결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가해진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위법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알 수 없다. 게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재개최하라는 안내나 지시를 할 수도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서 기각 혹은 인용이라는 재결만 할 뿐 후속 조치 요구나 처리 등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자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질의하였을 때,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이를 치유하여 자치위원회를 재개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재개최를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에, 지역위원회는 재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위원회의 재심 인용 결정에 따라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기각재결에 따른

행정청이나 학부모의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를 관리하는 통합적 포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처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및 재결, 가해·피해학생의 수용 여부, 이후의 진행 경과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관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 온 자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 7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시작한 첫 해인 2012년에는 퇴학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조치의 단계가 낮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서면사과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간의 감정대립 양상이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학교의 처분에 대한 불만·불신이 팽배하고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피해학생으로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대부분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정심판 청구 초기에는 주로 가해학생 일방이었던 청구인 유형이 쌍방 가·피해학생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결과 첫째,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법 개정 이전 학교별 자치위원회의 양형 차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운영하게 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법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증원 및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 기타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의 설정 등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의 집행금지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즉각적인 “기각”이나 “인용” 결정없이 “위원회의 재결에 같음한다”라는 결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의 폐단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부당한 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입

법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77건의 행정심판 사례의 청구인(가해학생 측)과 피청구인(학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청구인은 학교에 대한 불신·불만이 팽배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행정심판위원회 당일 구술심리에 참석하였을 때도 서로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행정심판법」의 “조정”<sup>13)</sup> 기능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를 참관해 보면, 구술심리를 위해 양측에서 참석한 당사자들은 각자 자기 주장에 대한 당위성만 내세울 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존중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사건이 종결된 후 과연 교사나 학교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학교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측도 마찬가지로 사건 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에 대하여 애정어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담당 장학사 등이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주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쌍방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비록 폭력과 처분이라는 인과관계에 놓인 상황이지만 용서나 이해, 배려 등의 작동기제가 교육의 당사자인 학교(교사)나 학생(학부모) 쌍방이 입은 상처치유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폭력이라는 불법행위에는 당연히 징계의 성격을 띠는 처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행정심판법」의 “조정”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그리고 학교라는 트라이앵글이 균형있게 존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규정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후 기준 없는 일방적인 취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지, 송달료 등) 도입에 관하여 학계나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통합적인 포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의 처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관리 등에 전체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유지,

13)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선 및 관리, 각종 통계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자료 생산, 보유, 통계 등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법 개정 이후 기존 자치위원회 대비 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수나 처분 등 각종 현황,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의 증감 여부, 청구 추세 변동,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갑석. (2015). 학교폭력대응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동은. (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대응 양상.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원영. (2018).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이진. (2017).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연. (2017).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과 고찰. **형사정책연구**, 28(4), 150-175.
- 김진훈. (2006).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도기봉. (2007).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신영. (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박영옥. (2014).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정옥.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서윤하. (2018).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서운호. (2013).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7(2), 85-115.
- 송열매. (2018).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을 위한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양정숙. (201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오민영. (2013).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오 언. (2013).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의 학교폭력 경향과 예방전략에 대한 교사의 인식분석.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윤주연. (2019).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학교.

- 윤태현.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상도. (2016). 학교환경요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이정도. (2014). 2012년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후 교사의 학교폭력 해결 경험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지현. (2018). [http://blog.naver.com/calm\\_marshall/221388443475](http://blog.naver.com/calm_marshall/221388443475) 에서 2020. 8. 4. 인출.
- 임재연. (20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사역량 진단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정관희. (2018). 행정심판 판례분석을 통한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갈등분석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정지원. (2014).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매커니즘: 놀이 하위문화와 패거리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성규. (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56, 229-256.
- 조은겸. (2016).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진주현. (2020). 행정소송 판례를 통한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한상철. (2020). <http://blog.naver.com/pojeon2018/221764094253> 에서 2020. 6. 13. 인출
- KBS NEWS. (2019.12.17.) '학폭위'전문 변호사·보험까지 등장...생기부가 뒤풀이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4527>)에서 2020. 6. 13. 인출
- Yin. Robert K. (2016).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lifornia: Sase Publications.
- 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Administrative Judgement Committee according to the revision 「Act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aion」

#### -A Case Study on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Kim, HyunSuk**(Ph.D.Candida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revised and implemented in March 1. 2020.,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Judgement Committee', which were organized and operated in schools as disposal agencies, were reviewed and search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mmittee's judgements.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isposition of school-based in similar cases, which hindered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Autonomous Committee but this is expect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the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is established i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nd deploy the professional manpower for efficient operation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appeals and cancellations, unnecessary consump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standards or restriction for administrative appeals and cancellations. Fourth, the actual recognizing ratio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creasing. Fifth, it was found that the management was insuffici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judgement. In addition, the use of the 'adjustment'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as presented for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Key words]** School violence,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Judgement, Trial